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6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.

발 의 자:김소희・임종득・서지영

김대식 • 박덕흠 • 김상훈

엄태영 · 최수진 · 이달희

최은석 · 서일준 · 서범수

김예지 · 김선교 · 이헌승

조경태 · 김장겸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 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 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, AI,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.

하지만,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.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 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정부는 AI,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) ① 정부는 AI,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(이하 "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·절차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전문 1인 창조기업 지
	원센터) ① 정부는 AI, 기후테
	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
	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
	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
	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
	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
	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
	기업 지원센터(이하 "전문 1인
	창조기업 지원센터"라 한다)로
	지정할 수 있다.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1항의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
	센터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
	③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
	터의 지정기준·절차, 운영 등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